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3. 6.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호

제출연월일 : 2018. 3.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센터의 업무,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9가지로 정의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마련함.

나.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에 대하여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마련함.

다.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인원·의장·부의장 등),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위촉과 해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가.「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5. 기타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 향후 부서협의 실시 및 의견 반영 예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향후 부서협의 실시 및 의견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1) 예고기간 : 2018. 1. 8.~ 2018. 1. 27.

2) 예고결과 : 의견수렴결과 반영 예정

라. 규제심사 : 향후 부서협의 실시 및 의견 반영 예정

마. 예산조치 : 비요추계서 참조

바.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4302)

☐ 조례안

조례 제 호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4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센터에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

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중“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8-2”를 “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6”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건강도시지원과장	김 연 안
	건강생활지원팀장	이 규 화 (041-746-8020)

[별표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논산시 해월로 125번길 26(화지동 167-1)	○ 취암동 - 화지1~5통 - 반월1~3통 ○ 부창동 - 대교2,3,5통 - 부창1,5통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에 따른 위원 회의 참석 수당 및 협의체 업무 추진(교육, 선전지 견학 등) 여비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나. 추계결과

○ 세출 : 35,000천원/5년

- 회의수당 : 100,000원 × 14명 × 2회 × 5년 = 14,000,000원
- 교 육 비 : 300,000원 × 14명 × 1회 × 5년 = 21,000,000원

다. 산출근거

○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3. 작성자

건강도시지원과장 김 연 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7	7	7	7	7	35
회의수당		2.8	2.8	2.8	2.8	2.8	14
교 육 비		4.2	4.2	4.2	4.2	4.2	21
재원 조달		7	7	7	7	7	35
의존 재원	소 계						
	국도비						
	시 비						
자체 수입	소 계	7	7	7	7	7	35
	지방세	7	7	7	7	7	3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역보건법」

○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행)**

□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세요 P43～45 발췌」

○ P43 발췌

2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세요

1. 지역건강협의체의 특성

- 보통 보건소 사업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 해옴
- 이와 차별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역건강협의체는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핵심 운영원리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이고 지역건강협의체가 이런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지역건강협의체의 중심은 주민건강조직이어야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체가 될 때보다는 주민건강조직이 주체가 될 때 성공가능성이 더욱 높음
  -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지역건강협의체 내에서 주민건강조직의 주도성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건강조직이 구성되고 난 후에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기존의 협의체	지역건강협의체
준비	• 협의체를 빨리 만드는 것이 목표 •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원 결정	• 지역상황을 잘 파악한 후 협의체 구성 •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위원 결정
위원	• 지역의 기관장, 단체대표들로 구성	•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원(50%) • 지역 기관장 및 협력기관 대표(50%)
운영	• 매년 1회, 반기 1회 회의 운영	• 최소한 분기 1회 회의 운영
기능	• 보건소 사업계획 보고받고 협조 • 보건소 사업평가 및 사업실적을 보고받음 • 협의체 자체적 활동 없음	•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 수립 •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평가 수행 • 협의체가 활동을 기획 • 정기적 운영과 활동 점검
관계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중심 • 협의체는 보조적 역할	• 협의체가 중심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력자 역할

Q. 주민건강조직이 제대로 조직되기 전에 지역건강협의체를 먼저 구성해놓으면 안되나요?

A. 주민건강조직이 제대로 조직되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조직의 역량이나 자원 보유 상태가 다른 기관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주민건강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지역건강협의체는 껍데기뿐인 협의체에 그치게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원리인 '주민참여'를 발휘하기가 힘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건강조직을 잘 구성하고 난 후에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주민조직이 잘 구축된 뒤에 단계적으로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세요.

○ P44 발췌

2.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지역건강협의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건강 거버넌스로서 일종의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가짐
- 구성원 : 주민건강조직 대표자,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기관들의 대표자들
  ※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는 총 인원 중 최소 50%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이 맡도록 함
- 의장 : 주민건강조직 대표자
- 간사 :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동으로 맡으면서 실무적인 작업 진행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역할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및 내부 회의와 관련된 행정과 실무 총괄. 또한 협의체에 참여한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주민건강조직 간사의 역할 : 지역건강협의체 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이를 지역건강협의체의 안건으로 만드는 역할을 함. 뿐만 아니라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주민건강조직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경우 주민건강조직을 대표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Q. 주민조직이 지역건강협의체의 주축이 되어야 하나요?

A.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주원리는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입니다. 이 운영원리를 실제적으로 사업에 녹여내고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조직이 주가 되는 지역건강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영원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의체 조직구성 역시 운영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보건소나 센터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영원리에 충실한 사업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협의체 운영의 주체는 주민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

- 지역건강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 이후 추가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결정은 지역건강협의체가 함
  –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주민건강조직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건강협의체에 참가하는 기관 및 단체와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
  – 만약 협력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없는 기관 및 단체가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석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강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일상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없는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사안별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P45 발췌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장,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 통반장 또는 이장 등 행정부문 및 이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문단 등으로 조직하여 지역건강협의체와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은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지역건강협의체의 외곽에서 이 조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된 조직은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단체,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복지관, 빈곤운동 단체 등
– 이들 기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주민건강조직과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이들 기관들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주민참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들 기관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단위 나아가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발굴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시켜야 함

• 지역건강협의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기구로서 최소한 분기별로는 모임을 가져야 함
– 1분기는 계획의 확정, 2분기와 3분기는 계획의 실행 및 모니터링, 4분기는 실행의 마무리 및 최종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함

※ '지역건강협의체' 명칭은 센터 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Summary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의 원칙

-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건강조직이 구성된 후에 구축
- 구체적인 운영 규정 필요
-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 일상적으로 협력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없는 기관 및 단체는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 불가
-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은 반드시 참여 필요
- 최소 분기별 운영
- 간사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동 수행